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전담 직무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 통보로 완화하여 각 부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요직위의 업무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절차 완화(안 제6조제5항 제2호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사고 발생시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신속하게 전담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통보로 완화함. 단,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절차를 유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6. ~ 11.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자를 임용심사 전에 심사예정직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통보된 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 ④ (생략)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u>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u>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 ----- ----- -----. ----- ----- ----- ----- ----- -----.

<u><신 설></u>	<u>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자를 임용심사 전에 심사 예정 직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u>⑥ (생 략)</u>	<u>⑦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통보된 직무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다.</u>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7